

외상대금 지급기준

1. 대금 지급일: 월 4회

국가계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(대가의 지급) 준수를 위해 병원과 계약상대자 간 정기청구일을 다음과 같이 정함.(약품 및 진료재료, 의료장비 제외)

구분	청구일 =세금계산서 작성일 (청구서가 없는 경우)	기준일수	정기 지급일
원칙	각 정기지급일 기준 D-5영업일	청구일로부터 5일	5일
			12일
			19일
			25일
합의서 작성 시	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됨.		

※ 단, 예외적으로 병원과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약에 의하여 청구일 외의 날짜에 청구할 수 있음.

※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에 의거 기간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함.

※ 정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을 지급일로 함

2. 외상대금 지급기준

구분	계약금액	기준일	관련 근거
약품	500만원 이하	30일	약사법 제47조
	500만원 초과	<u>6개월 도래 직전</u> <u>25일 정기지급일</u>	
진료재료, 의료장비	1,000만원 이하	30일	국립대학교병원 계약대가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
	1,000만원 초과	<u>3개월 도래 직전</u> <u>25일 정기지급</u>	
그 외	무관	5영업일	국가계약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
		10영업일 (합의서 작성)	

※ 기준일수 적용은 청구를 받은 날(청구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)로부터 적용됨.

3. 시행일: 2022년 7월 1일(시행일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함)